[붙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일 2026년 11월 1일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카라”라 한다)의 임원 후보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굴·심사·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내규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신규 선임 추천에 적용한다. 이 내규는 정관 제12조의 임원 추천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며,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한다.

제2조 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후보자 모집·추천 접수, 자격 및 적합성 심사, 필요한 사실 확인, 면담, 후보 추천안 작성 및 이사회 보고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기구이며 임원의 선출·선임을 확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할 후보를 결정한다. 정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궐임원의 이사회 선출 등 예외 절차는 해당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회가 위원회 추천안과 다른 후보를 상정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는 해당 후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제3조 위원 수와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 2명, 외부위원 2명 및 회원위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하나의 구성 구분에만 산입한다.

② 이사위원은 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정한다. 외부위원은 카라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동물권, 시민사회, 조직운영, 법률·회계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회원위원은 회원 대상 공개 모집 또는 추천을 거쳐,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정관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정한다. 현직 임직원은 회원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위원 구성 시 전문성, 성별, 활동 경험 및 관점의 균형을 고려한다. 이사회는 위원의 성명, 구성 구분 및 주요 경력을 회원에게 알린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또는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명의 일부를 가리거나 주요 경력의 공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같은 구성 구분에서 보충한다. 후보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제한을 적용한다.

제4조 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출은 제8조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해당 임원 선출의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제척·회피 또는 직무수행 불가 시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사무국은 간사를 지정하여 접수, 회의 준비 및 기록·자료 관리를 지원한다. 간사는 위원이 아니며 심사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5조 후보자 모집과 추천

① 위원회는 모집 전에 선임 예정 직위·인원, 후보 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추천·지원 방법 및 일정을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선임 예정 인원은 정관 제11조의 대표이사 1~3명, 이사 5~10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2명의 정수와 재임 임원 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모집은 하나의 공고와 공통 서류로 진행할 수 있다. 지원·추천 직위를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직위별로 심사·추천한다.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 후보로도 심사·추천하려면 후보자의 동의를 확인한다. 감사 후보는 이사 후보와 구분하여 심사하며, 이사와 감사의 동시 선임을 전제로 추천하지 않는다.

③ 후보자는 정관 제12조제2항에 따라 카라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비회원도 지원·추천할 수 있으나, 선출 후 1개월 이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후보자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다.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④ 후보자는 회원·대의원·임원·외부 인사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 본인의 지원 및 위원회의 발굴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모집 방법에 따른 심사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⑤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사항을 공고하며, 접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으로 한다. 보궐 선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출서류는 후보자 동의서, 주요 경력, 지원 또는 추천 사유,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동의서로 한다. 제3자 추천의 경우 후보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심사한다.

제6조 후보자 심사

① 위원회는 회원 자격 또는 비회원의 가입 의사, 정관 제13조의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공통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카라의 목적과 동물권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의지

2.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및 활동 역량

3. 윤리성, 책임성, 협력·소통 능력 및 이해충돌 여부

4.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및 역할 수행 의지

② 대표이사 후보는 조직운영·재정·대외협력 역량과 비전을, 감사 후보는 독립성과 감사 수행 역량을 추가로 심사한다. 이사 후보는 이사회 전체의 전문성 및 구성 균형을 고려한다.

③ 심사는 서류 검토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면담과 후보자 동의에 따른 경력 확인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은 심사 전에 확정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후 변경하지 않는다.

④ 자료 누락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불리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을 때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고, 후보자에게 필요한 설명 기회를 부여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부적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⑤ 대표이사 후보는 이사로서의 기본 적합성과 대표이사 직무수행 역량을 함께 검토하고 대표이사 후보 전체의 비교 심사를 거친다.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이사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이사 정수에는 1명으로 산입한다. 심사표와 추천 사유는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최종 추천은 제8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7조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수

① 위원회는 직위별 선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적격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대표이사 1명을 선출할 경우에는 적격 후보가 있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2명을 추천한다.

② 적격 후보가 선임 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대표 후보가 1명뿐인 경우에는 추가 모집 여부를 의결한다. 추가 모집 후에도 부족하거나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미달 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적격자가 없으면 추천하지 않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추천 보고서에는 직위별 후보 명단, 주요 경력, 추천 사유, 심사 경과, 제척·회피 및 의결 결과를 포함한다. 별도 의결이 없으면 후보 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소수의견은 요청에 따라 첨부한다.

④ 추천 인원과 총회 상정 인원은 구분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사·감사 후보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이사 후보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추천만으로 선임이 확정된 것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⑤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 추천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정관 제31조의 제척 규정을 적용한다. 본인의 선임에 관한 안건인 이사는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정족수와 제척 처리에는 정관을 적용하며, 제8조제4항의 위원회 정족수 산정 방식을 이사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회의와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일시·안건·자료는 원칙적으로 3일 전까지 제공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단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본인 확인과 토론·표결 참여가 가능한 화상 참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대리 출석과 의결권 위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1표를 행사하며 추가 결정표를 갖지 않는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제척·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재적위원 수와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중 최소 3명이 출석해야 심사·의결할 수 있다. 기권은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⑤ 후보별 적격성과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추천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적격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확정한 평가방식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추천안을 의결한다.

⑥ 가부동수로 추천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토론·보완 심사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정족수 부족 또는 반복된 부결로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위원 보충, 일정 조정 또는 추가 모집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자료 열람, 심사, 토론 및 표결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해당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기로 동의한 경우

2.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인 경우

3. 후보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분쟁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대표이사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인 경우에는 본인 안건뿐 아니라 대표이사 후보 전체의 심사·비교·추천 의결 및 그 심사기준 결정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직위의 후보자인 위원도 본인의 선임과 직접 경쟁하는 동일 직위 후보의 비교·선정 및 본인에게 적용될 심사기준 결정에서 제외한다. 다른 직위의 심사에는 제1항의 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 여부와 기피 신청은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척·회피한 위원은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부여되는 설명 기회 외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간사는 참여 제한 대상의 자료 접근을 차단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후보자 정보, 심사 내용 및 미공개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활동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② 위원과 간사는 비밀유지 및 이해관계 신고 서약서를 제출한다. 자료의 무단 복제·전달을 금지하며 개인 보관 자료는 활동 종료 시 반환하거나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③ 법령상 제출 의무, 적법한 신고 또는 승인된 공식 보고·공개는 제1항에 따른 무단 누설로 보지 않는다. 공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다.

제11조 후보자 개인정보 관리

① 후보자 개인정보는 모집·심사·추천 및 선출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수집·이용한다.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동의 거부권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안내한다.

②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범죄경력 등 법률상 제한되는 정보는 적법한 근거 없이 요구·수집하지 않는다. 단순 동의만으로 제한되는 정보의 수집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외부 추천자는 본인의 추천 의사와 후보자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후보자의 경력 확인 또는 외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적법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④ 심사자료 접근은 해당 안건에 참여하는 위원, 간사 및 권한 있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이사회에는 추천 검토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고, 총회·회원에게는 선출에 필요한 약력과 출마 의견 등 최소 정보만 적법하게 공개한다.

⑤ 사무국은 접근권한 관리, 암호 설정, 잠금 보관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후보자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⑥ 후보자 제출서류와 개인별 심사자료는 선출 절차 완료 시 필요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이의 처리 목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최소 자료는 그 목적과 기간을 사전 안내하고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되, 원칙적으로 선출 절차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파기한다.

⑦ 법령상 보존 의무 또는 진행 중인 분쟁 대응 등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만 분리 보관하고 사유·기간·접근자를 기록한다. 근거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선임된 후보의 인사·등기자료는 해당 업무의 적법한 근거와 보존 기준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12조 회의록과 심사자료 보관

① 간사는 회의 일시·방법,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 제척·회피, 표결 참여 인원, 찬반·기권 수 및 의결 결과를 기록한다. 위원장과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이 확인한다.

② 회의록과 최종 추천 보고서는 절차 확인에 필요한 최소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이 5년간 보관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상세한 개인별 평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거나 삭제·익명 처리한다.

③ 후보자 제출서류와 개인별 심사표는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며, 회의록 보관기간을 이유로 일괄 장기 보관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구성, 일정, 모집 방법 및 추천 절차의 개요를 공개할 수 있다. 후보별 심사표와 비공개 논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관계 법령상 의무와 정관상 적법한 열람권은 존중한다.

제13조 활동종료와 자료인계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해당 임원 선출 절차와 필요한 보완 심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 및 자료 인계를 완료한 때 활동을 종료한다. 총회에서 후보가 부결되거나 재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종료 시 사무국에 회의록, 추천 보고서 및 보유 중인 자료의 목록을 인계한다. 사무국은 제11조·제12조에 따라 보관·파기하고, 위원·간사의 개인 보관본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③ 활동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한다. 종료 후 새로운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제14조 내규의 개정과 보충

이 내규의 제정·개정은 정관 제32조 제8호 및 제49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한다.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운영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의결하되, 후보자의 권리나 선출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 최초 위원회는 이 내규 시행 후 이사회가 구성한다. 후보자 심사 전에 구성·심사·제척 및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확정하여 안내한다.

제3조 제3조제3항의 “현직 임직원은 회원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회원위원 모집부터 적용한다.